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지원 강화〉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76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참전명예수당 인상	3
2.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 지원	7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9. 25.
3. 회부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진료비를 60%만 감면해주는 등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한데는 국가적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함(안 제6조제7항).
-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참전명예수당 인상

- 개정안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략)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u>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u> ⑧ <u>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및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42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¹⁾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²⁾의 60%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에 따른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80만 2,000원³⁾ 이상이 되는데, 이는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상이7급 기준 월 60만 8,000원)이나 공훈을 인정받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월 48만원~50만원)보다 많아지므로, 다른 국가 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보훈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 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정의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고, 소득인정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이를 대체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적용하고 있음.

3) 최저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579조에 생계비(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중위소득 60%산정)를 준용, '24년 1인 기준 중위소득(2,228천원)의 60%인 1,337천원의 60% 적용(국가보훈부)

<상이유공자 등 보상금과 참전유공자 수당 비교>

(단위: 천원)

참전명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현행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20	802*	608	426	480~500

* 최저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4)의 생계비(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중위소득 60%산정)를 준용, '24년 1인 기준 중위소득(2,228천원)의 60%인 1,337천원의 60% 적용

자료 : 국가보훈부

□ 또한, 법률에서 직접 수당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는 경제상황 등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도 있다는 점과,⁵⁾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2조 614억원(연평균 4,123억원)⁶⁾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률 및 「기초연금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6) 국가보훈부가 추계한 추가재정소요 기준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① 참전유공자(명)	108,621	98,355	89,059	80,642	73,021
② 인상단가(천원)	802	802	802	802	802
③ 소요예산 (①×②×12, 백만원)	1,045,369	946,569	857,104	776,099	702,754
④ 기존단가(천원)	420	420	420	420	420
⑤ 기존단가소요예산 (①×④×12, 백만원)	547,450	495,709	448,857	406,436	368,026
⑥ 추가소요예산 (③-⑤, 백만원)	497,919	450,860	408,247	369,663	334,728

* 인원 : 중기재정소요 인원 반영

** 최저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생계비(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중위소득 60%산정)를 준용, '24년 1인 기준중위소득(2,228천원) 60%의 60%인 802천원 적용

*** 기존단가 : 24년 참전명예수당 단가(42만원) 적용

자료 : 국가보훈부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⁷⁾을 매년 고시하여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만 급격히 인상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 상향 요구로 이어져 보훈급여금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 지원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료지원) ① ----- ----- ----- ----- ----- ----- ----- ----- ----- ----- ----- . 다만, 75세 이상인 참전 유공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⁸⁾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약제비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 >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급여	감면지원(90%감면)	감면지원(90%감면)
	비급여	감면지원(90%감면)	미지원
약제비		감면지원(90%감면)	감면지원(90%감면) * 단, 1인당 연간한도액 252,000원
지원 연령제한		없음	없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료지원)

-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 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 ④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 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⑤ ~ ⑦ (생략)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왔는데, 2018년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하였고, 2022년에는 위탁병원 약제비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23년에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연령 제한(75세 이상)을 폐지하였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경과 >

시기	의료지원 확대 내용
1992년 7월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감면진료(30%) 시작
1998년 7월	감면율 50%로 상향
2005년 7월	감면율 60%로 상향
2009년 7월	75세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 시작
2018년 1월	감면율 90%로 상향
2022년 10월	위탁병원 진료시 약제비 지원(연간 252,000원 한도)
2023년 10월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 폐지

자료 : 국가보훈부

-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참전유공자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함께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지원의 확대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훈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 비율을

100%로 높여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보다 원활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또한,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6·25전쟁 참전자의 경우 93세, 월남전 참전자의 경우 78세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국가가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임을 감안한 전향적 시책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⁹⁾

<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만나이 기준, 2024.10.31.기준)

구분	계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6.25	30,747	-	-	68	3,764	21,540	5,082	293
월남	87,913	9,344	58,231	17,997	1,958	375	8	-
6.25&월남	681	-	-	-	59	544	78	-
계	119,341	9,344	58,231	18,065	5,781	22,459	5,168	293

자료 : 국가보훈부

- 특히,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의 본인부담도 병원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

9) 2024년 10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119,341명 중 75세 미만 참전유공자는 9,344명(7.8%)이고 가장 연소한 참전유공자는 70세임.

다는 점에서, 단계적·점진적 해소 방안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한해서만이라도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은 의료지원이 절실한 참전유공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먼저, 신체적 희생이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는 30~90% 감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지원 체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상이자인 7급 상이자와 고엽제 정도 환자도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10%)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에게 우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가보훈부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100% 지원 시 향후 5년간 재정투입 추가 소요를 약 355억원(연간 약 71억원)으로 추산함.

< 개정안에 따른 재정투입 추가소요(국가보훈부 추산) >

(단위: 억원)

구분	금액
현행 유지(90% 감면) 시 5년간(2025~2029년) 재정소요	3,191
전액 지원(100% 감면) 시 5년간(2025~2029년) 재정소요	3,546
추가 투입 소요액	355

자료 : 국가보훈부 제출자료 재구성

□ 종합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 및 재정적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되,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에 접어드는 참전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단계적 추진¹⁰⁾ 등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¹¹⁾

문 의 처

02)6788-5107

10)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우선 적용, 약제비에 우선 적용, 생활 수준을 고려한 일부 대상자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한 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1) 국가보훈부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단계적 추진 등 대안 마련에는 동의하는 입장임.

